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정 1991년 4월 8일 조례 제 245호
개정 2006년 7월 31일 조례 제 885호
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49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2011년 1월 10일 조례 제1132호
일부개정 2018년 8월 10일 조례 제1668호
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75호
일부개정 2023년 3월 31일 조례 제2049호
일부개정 2026년 7월 27일 조례 제2375호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가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5, 2018. 8. 10, 2022. 1. 13>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7. 31, 2022. 1. 13>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개정 2022. 1. 1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임기만료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2. 1. 13>

제2조의2(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주민조례심사특별

위원회를 둔다.

② 제3조와 제4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회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1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6. 7. 27>

[본조신설 2022. 1. 13]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대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8. 10, 2026. 7. 27>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11. 1.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 1. 10>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 1. 10>

[제목개정 2011. 1. 10]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의2(전문가의 활용 등) ① 위원회는 의결로써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회의 또는 감사·조사 현장에 출석하

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활용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31]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31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5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0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0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31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7. 27 조례 제2375호,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